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003)
제32집 pp. 163~175

스포츠경기 심판의 판정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崔 泰 義*

〈목 차〉

Ⅰ. 서 론
1. 스포츠와 룰
2. 심판의 역할
Ⅱ. 판정능력 향상을 위한 심판의 과제
1. 공정한 판정을 위한 노력
2. 체력향상을 위한 노력
3. 안전대책을 위한 노력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1. 스포츠와 룰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는 인류의 긴 생활·노동의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전달되어온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지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형태로 변화되기도 하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로서 정착되기도 하였다. 특히, 스포츠문화는 언어·풍습의 벽을 넘어 서로의 민족성이나 문화성을 이해하는 사

* 제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회적 제작용을 포함하며, 승패나 경쟁 또는 협동을 통한 체험과정에서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스포츠 관을 갖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초교육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佐藤·吉原: 1990).

현행의 스포츠경기는 운동생리학·운동심리학·운동역학 등의 각 분야에서 결집된 과학적인 지혜가 보다 나은 기록이나 퍼포먼스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승리나 경쟁을 위한 스포츠 교류 또는 선수육성과정에서 과도한 트레이닝이나 약물복용이라는 인간성을 무시한 운동처방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이나 내셔널리즘에 의해 발생되는 이념을 바르게 변혁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인간상호의 이해와 아울러 국적·문화·언어가 다른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음의 교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앞으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스포츠경기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의 기능을 습득한 후에, 이를 서로 겨루어 보는 과정에서 평가의 기준이 확립되고, 이것이 확대되어 조직이 구성되고 스포츠경기로 발전되었으며, 각종 스포츠경기의 성공여부는 해당 스포츠의 존재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瀧澤(1992)은 스포츠경기의 룰은 경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의 규범과 경기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직의 규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행위규범에는 명시적인 룰과 묵시적인 룰이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룰이 존재하며, 이러한 룰은 스포츠경기를 성립시키고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스포츠 룰은 일반사회의 규범과 같이 스포츠에 관련된 구성원의 행위·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스포츠경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룰은 해당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성공적인 스포츠경기는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경기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종 스포츠경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다운 룰의 고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술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경기규칙(채점규칙 포함)은 기술의 진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심판의 역할

스포츠경기는 승패를 다투는 경기이다. 일반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은 각각의 스포츠종목에 해당하는 경기규칙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러한 경기규칙에 의한 스포츠종목은 기록경기(육상경기, 경영, 스피드 스케이트, 스키, 역도, 보트 등), 채점경기(체조, 싱크로, 다이빙, 피겨 스케이트 등), 표적경기(양궁, 사격, 볼링 등), 격투경기(씨름, 복싱, 레슬링, 유도, 검도, 펜싱 등), 복합형경기(스키 점프: 거리·비형, 바이아스론: 거리스키·사격 등), 볼 게임(골형: 축구·럭비·핸드볼·농구·수구·아이스 하키·필드 하키 등, 네트형: 테니스·배구·배드민턴 등, 야구형: 야구·소프트 볼 등, 골프형: 골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佐見, 1988).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경기는 경기자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경기를 판정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통된 방법이다. 또한 경기에는 직접 승패에 관련되는 판정만이 아니라, 경기의 진행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거나,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 경기를 진행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스포츠경기에서는 이러한 감시나 규정도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스포츠경기 종목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심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심판도 인간인 이상 판단이나 적용상의 실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실수는 심판 자신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의해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제로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오늘날 각종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게임의 진행은 물론, 선수의 안전과 경기력을 최대화하고 해당 스포츠경기의 존속에도 기여해야 한다. 특히,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심판은 공정한 판정은 물론, 선수들이 규칙을 준수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를 진행시켜야 한다.

江成(1990)는 핸드볼 룰의 정신은 상대방에 상해를 입히지 않고 공정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며, 심판은 이러한 룰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심판의 판정능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게임의 분석(VTR 등)을 통하여 개인적 판단의 능력 향상과 통일된 평가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종삼 · 최관용(1999)은 유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판의 객관성 문제는 심판기술이나 규정의 이해 유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오심, 미숙한 경기운영은 해당 스포츠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최관용 · 조민선(2000)은 실제 경기장에서는 심판에 따라 동일한 선수의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심판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판정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불공정한 심판문제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특히, 육상경기, 경영 등과 같은 기록경기에서는 승패의 객관성이 존재하지만, 채점경기, 투기 및 볼게임 등과 같은 경기에서는 심판의 주관적 판단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사엽 · 김희중(2000)은 심판판정에 대한 하키선수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으며, 심판판정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정기적인 특별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심판의 전문화 및 엄격한 심판자격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의 공정한 판정 및 고유권한인 결정권을 더 한층 보장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심판은 해당 스포츠에 대한 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 경기력의 이해, 새로운 심판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강인한 체력의 유지, 새로운 판정 방법의 고안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를 보다 즐겁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많은 참여 및 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지향하기 위한 룰의 고안 · 개정의 일환으로써, 스포츠경기에 임하는 심판의 판정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Ⅱ. 판정능력 향상을 위한 심판의 과제

1. 공정한 판정을 위한 노력

木村(1991)는 여자체조경기의 제1종 심판원의 자기평가나 理想像은 제2 · 3종 심판원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체조경기의 기능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되는 과정에서 제1종 심판원 중에서도 자신의 코치능력이나 심판능력의 결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최종삼 · 최관용(1999)은 유도 판정 경기에서 심판은 경기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선수의 실적 및 지명도, 장외의 기술, 심판에 대한 예의, 경기 개최지, 코

치의 태도나 행위 등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선수는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선언되지 않은 기술의 효과에 대하여 심판은 기술에 대한 포인트를 중요시하지만 선수는 공격력이나 공격횟수가 유리하고, 심판은 적극적인 동작을 유리하게 판단하지만 선수는 우세한 잡기 자세가 유리하다는 등의 이견을 나타냈다고 지적하였다.

김사엽 · 김희중(2000)은 중 · 고 하키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의식과 영향력 조사에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고등학생선수가 중학생선수보다, 선수경력이 많은 선수가 적은 선수보다 심판의 자질 및 태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심판판정에 따라 경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의식은 낮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 심판의 전문화, 엄격한 자격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관용 · 조민선(2000)은 유도경기의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점은 심판간에 득점 선언의 기준, 벌칙 적용 기준 및 시점이 다르고, 벌칙 적용이 국제경기에서는 엄격하고 국내경기에서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판정에서 득점과 벌칙이 동일한 경우에는 득점을 우세하게 보아야 하며, 판정에서 고려할 요인은 기술에 대한 포인트, 공격력 · 공격 횟수, 잡기 자세 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서는 심판 연수를 통한 득 · 실점 선언기준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득점의 기준이나 벌점의 적용사례를 비디오를 통하여 심판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유도연맹의 심판규정 변화나 국제경기에 대한 심판모습을 민첩하게 국내에 수용할 수 있는 태세의 확립과 새로운 기술 변화, 규정, 제스처 등을 숙지하여 심판행위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淺見(1988)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규모의 축구경기는 각 대륙의 형평성과 심판의 능력(특히, 주심)을 고려하여 세계각국의 톱클래스의 심판으로 구성되지만, 톱클래스의 심판이 되면 대부분의 해당국가에서는 선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심과 선심간의 언어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의 실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으며, 동일 국가 주심과 부심 3명이 심판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금동근(동아일보: 2002. 6월 25일)은 2002년 한 · 일월드컵축구경기에서 야기되었던 오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판 및 판정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써,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동일국가 주심과 부심의 배정이라는 새로운 심판 배정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小林 등(1988)은 축구주심의 공정한 판정을 위한 일환으로써 주심과 볼과의 거리 ·

각도에 대한 위반의 판정, 어드밴티지 및 위반의 간과를 조사한 결과, 위반의 판정 및 간과에서는 등록종별 자격간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위반의 간과는 킥킹, 오프사이드 반칙이 많았으며, 위반의 간과율은 등록종별 자격이 낮을수록 높았다고 지적하였으며 〈표 1〉, 小林 등(1990)은 1급 심판원의 경우에는 위반의 간과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위반의 간과 중 프리킥 판정과 어드밴티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국고교(6.1회)에서는 86.5%(5.3회), 13.5%(0.8회), JSL · 천황배(3.7회)에서는 92.7%(3.5회), 7.3%(0.2회)로 나타났다고 하였다〈표 2〉.

〈표 1〉 위반의 판정 · 어드밴티지적용 · 위반의 간과율(小林 등: 1988)

구 분	심판원	위반의 판정(%)	어드밴티지 적용(%)	위반의 간과(%)
전국소년대회 (52시합)	1급	82.2%	9.3%	8.5%
	2급	56.1%	7.5%	36.4%
	3급	45.7%	5.4%	48.9%

〈표 2〉 1급 심판원의 위반의 판정 · 어드밴티지적용 · 위반의 간과율(小林 등: 1990)

구 분	위반의 판정(%)	어드밴티지 적용(%)	위반의 간과(%)
전국고교 6시합	76.6%(31.0회) • 적당(91.9%: 28.5회) • 부적당(8.1%: 2.5회)	8.2%(3.3회) • 적당(100.0%: 3.3회) • 부적당(0.0%: 0.0회)	15.2%(6.1회) • 판정(86.5%: 5.3회) • ADV(13.5%: 0.8회)
JSL,천황배 11시합	80.0%(37.9회) • 적당(97.4%: 36.9회) • 부적당(2.6%: 1.0회)	12.1%(5.7회) • 적당(96.8%: 5.5회) • 부적당(3.2%: 0.2회)	7.9%(3.7회) • 판정(92.7%: 3.5회) • ADV(7.3%: 0.2회)

이러한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는 2002년 한 · 일월드컵축구경기에서도 일어났으며, 이에 관련된 주요 주심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표 3〉에 나타냈다.

〈표 3〉 2002년 한 · 일월드컵축구경기 주심 판정에 대한 이모저모

경기(일정)	판 정 의 시 비	비고
브라질:터키 〈2002. 6. 3〉	• 심판이 외잘란(터키)이 범한 페널티 지역 밖의 파울에 대하여 프리킥이 아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 윈살(터키)이 찬 볼이 히바우두(브라질)의 다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감싸는 과장된 몸짓에 현혹되어 윈살을 퇴장시키는 우를 범했다.	예선
한국:포루투칼 〈2002. 6.14〉	• 박지성(한국)에게 백 태클을 하여 퇴장 당한 핀투(포루투칼)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가격하였다.	예선
한국:이탈리아 〈2002. 6.18〉	• 심판이 시뮬레이션 액션이었다고 토티(이탈리아)의 퇴장을 선언했다.	16강
한국:스페인 〈2002. 6.22〉	• 심판이 스페인의 골든 골을 골라인 아웃으로 선언했다.	8강

브라질과 터키전에서는 페널티 지역 밖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던 터키선수의 파울을 프리킥이 아닌 페널티킥으로 선언했으며, 경기가 중지된 상태에서 터키 선수가 찬 볼이 브라질 선수의 다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감싸는 과장된 몸짓에 현혹되어 터키 선수를 퇴장시켰으며, 한국과 포루투칼전에서는 한국 선수에게 백 태클을 하여 퇴장명령을 받은 포루투칼 선수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가격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이탈리아전에서는 시뮬레이션 액션이라는 이유로 심판이 이탈리아 선수를 퇴장시킨 것과 한국과 스페인전에서는 스페인의 골든 골을 심판이 골라인 아웃으로 선언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주심 판정에 대하여 볼을 다루는 경기에서 심판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해 주는 존재로서 심판의 판정이 틀린다해도 판정을 받아들여 게임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예를 들어, 히딩크 전 한국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도 감독도, 주심도 부심도 잘못을 저지른다. 진 팀은 주위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고 하였으며(김상수, 동아일보: 6월 23일), 곽민영(동아일보: 6월 25일)은 '한국-이탈리아전의 주심은 본보기가 될 만큼 모범적이었으며, 심판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월드컵에서 주심의 판정은 올바른 자세에서 비롯되었고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카토 히사시 NHK축구해설위원은 '판정시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아시아 팀들은 역대대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채 패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별

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고 하였으며, 마이니치 신문은 '축구강국이 끝까지 남도록 하여 대회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상업주위에서 비롯' 된 것이었으며, 朝日 신문도 '플레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즉 심판이 오심할 수도 있다' 고 논평하였다(심규선, 동아일보: 6월 26일). 한편, 이탈리아의 주심 콜리나 피엘위기는 '가장 뛰어난 심판은 경기가 끝난 뒤 누가 심판을 봤는지 팬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FIFA에 규정돼 있는 룰을 충실히 적용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하였다(김상수, 동아일보: 6월 7일).

이상과 같이, 심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오심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판정을 위한 부단한 자기연마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체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각종 스포츠경기에 임하는 심판은 보다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상황판단이 가능한 각도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구기종목과 같이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경기에서는 심판의 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력이 볼의 이동에 뒤쳐지지 않고 또한 공정한 판정을 위한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小林 등(1991)은 일본 국내 축구경기의 외국인과 국내 주심의 이동거리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주심이 내국인 주심보다 이동거리가 다소 많았지만, 볼의 이동거리에 대한 주심의 이동거리의 비율은 내국인 주심이 다소 높았고, 또한 전반과 후반의 주심의 이동거리는 거의 비슷했지만, 볼의 이동거리에 대한 주심의 움직임의 비율은 전반보다는 후반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표 4〉.

〈표 4〉 일본국내축구경기의 외국인과 일본인 주심과 볼의 이동거리(小林 등: 1991)

구 분		시합수	1시합당 평균(90분)			R/B
			전 반	후 반	전 체	
외국인	심판	6	5,559±407	5,454±561	11,013±907	42.9%
	볼		13,404	12,251	25,655	
일본인	심판	5	5,345±439	5,280±511	10,625±885	45.3%
	볼		11,922	11,558	23,480	

한편, 小林 등(1992)은 국제여자축구경기의 주심과 볼의 이동거리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주심은 평균적으로 9.4km 내지는 9.5km, 여자주심은 7.8km를 이동하였고, 볼의 이동거리에 대한 주심의 이동거리 비율은 남자주심이 45%이었지만, 여자주심은 36%에 지나지 않았으며, 게임의 전개가 스피드화됨에 따라 심판은 가능하면 가까운 위치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체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표 5〉.

〈표 5〉 국제여자축구경기의 주심과 볼의 이동거리(小林 등: 1992)

대 회 명	5분 간격의 평균			1시합당 평균(80분)			R/B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제1회FIFA세계여자선수권 (남자주심: 결승, 준결승)	601.9 ±60.0	581.0 ±91.3	591.5 ±78.0	4815.6	4648.0	9463.6	45.4%
제8회아시아컵여자선수권 (남자주심: 결승, 준결승)	578.0 ±85.1	609.5 ±75.1	593.8 ±81.8	4624.3	4875.9	9500.2	45.6%
제1회FIFA세계여자선수권 (여자주심: 3, 4위전)	474.2 ±59.6	501.7 ±41.1	488.0 ±53.0	3793.7	4013.9	7807.6	36.2%

이상과 같이, 심판은 구기종목(특히, 축구)과 같은 스피드한 경기에서 상황판단이 가능한 각도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의 유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안전대책을 위한 노력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선수들이 규칙을 준수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경기를 진행시킨다 하여도 인간인 이상 100% 공정할 수는 없다. 판단상의 미스, 적용상의 착오, 석연치 않은 판정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때로는 이것이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대소동으로 발전하는 일도 있다. 특히 선수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원만한 진행과 아울러 반칙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선수들의 외상·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 선수 자신의 문제(자신, 상대선수, 주위사람 등에 의한 위험 가능성 인식)에서도 기인하지

만, 용구, 룰, 환경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특히, 심판은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제반 위험요인으로부터 선수들의 상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齊藤 등(1992)은 스크럼 또는 택클에 의해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럭비의 경우에는 의무위원의 배치와 함께 교체선수의 인정, 스크럼, 택클에 관련된 룰의 개정과 스파이크 규격의 변경, 헤드기어, 마우스 가드 등의 장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淺野(1992)는 육상경기의 안전대책으로는 투햄머나 투원반 서클 주위는 안전을 위해 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투사입구를 좁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창던지기는 창의 구조변경에 의해 투사거리를 좁여야 하며, 마라톤을 중심으로 한 도로경기에서는 노면의 상태, 굴곡의 빈도, 고도차 등을 사전 조사하여 경기자의 안전대책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市川 등(1992)은 아마츄어 복싱선수의 두경부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뇌 상해의 조기발견 내지 치료를 위해 헤드기어, 마우스 피스, 글러브의 개선, KO 또는 RCS시의 사후처리, 보호규정이나 뇌 전문의 진료 등에 관련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武藤 등(1992)는 수영은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서 스포츠 사고의 발생율도 타 종목에 비하여 낮지만, 수영부 활동 중 다이빙대에서 일어나는 두부, 경추 및 척추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마음가짐, 적절한 다이빙 방법, 환경요인(수심, 다이빙대)의 개선, 수영장의 지도·관리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山下(1992)는 축구의 외상 요인으로는 트레이닝 부족, 부적당한 재활 훈련, 관절불안정성, 근 피로, 용구, 그라운드, 반칙 등이었으며, 또한 선수간의 접촉에 의해 근파열, 염좌, 타박, 골절, 반월판 손상 등이 주된 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상의 예방을 위하여 트레이닝 방법, 용구(shin guard, 슈즈), 족관절 테이핑, 하지외상후의 재활훈련, 슬관절 불안정 선수 출장 정지, 룰의 중요성과 반칙자에 의해 생기는 외상의 위험에 대한 정보, 의사나 치료사에 의한 예방법의 관리 등과 같은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하퇴의 외상 방지는 물론, 염좌의 발생과 혈액을 통한 AIDS의 감염예방이라는 차원에서 1988년 FIFA는 주최하는 모든 경기대회에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의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용구의 사용은 하퇴 상해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룰의 준수는 파울플레이에 의한 외상 발생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경기에 대하여 朝日신문은 선수들은 심판을 속이면서 서로

밀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걸고,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는 교활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폭력적인 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고 축구의 영원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86년 멕시코 대회에서 '신의 손'이라는 불명예와 역사에 남을 '5명 제치기'를 했던 마라도나(아르헨티나)는 '5명 제치기는 상대방인 잉글랜드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만약 잉글랜드 선수가 마라도나의 유니폼을 붙잡거나 반칙을 했다면 그 플레이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심규선, 동아일보: 6월 20일). 또한 '축구인가 격투기인가'라는 칼럼(박영균, 동아일보: 6월 21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은 코뼈가 부러진 한국 선수, 눈언저리가 찢어진 이탈리아 선수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축구가 아닌 격투기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렇듯 심판이 안보는 사이에 상대방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또는 넘어뜨리거나 차거나 때리는 신체적·정신적인 반칙행위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반칙행위는 TV에 선명하고 생생하게 되풀이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선수들의 비신사적인 행동과 엄살을 부리거나 아픈척하면서 과장된 몸짓으로 경기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은 실제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서는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선수들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방송사 월드컵 프로그램 진행자의 위험한 플레이 즉, 정신적인 상해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기를 몇 시간 앞 둔 모 방송사에서는 '상기하자 오노, 잊지 말자 솔트레이크'라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감정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하였으며, 현장의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나 해설자도 카메룬과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 0대 8로 대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고등학교 선수단에게 출전권을 줬어도 그보다 잘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물론, 덴마크와 세네갈전에서도 절도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세네갈의 한 선수를 가리키며, 경기와 무관한 절도사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다(김수경, 동아일보: 6월 13일).

이상과 같이, 심판은 선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선수들의 안전대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수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시켜야 함과 동시에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판단과 특정한 선수·팀·지도자에게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함을 제공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판의 판정능력의 향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끊임없이 제기되는 오심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판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선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선수들의 안전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었을 때, 『심판의 결정이 최종적이다』라는 심판의 고유한 권한을 더 한층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1) 곽민영(2002. 6.25), 한국 - 伊전 주심은 모범적 판정, 동아일보.
2) 금동근(2002. 6.25), FIFA 심판 배정방식 변경 검토, 동아일보.
3) 김사엽, 김희중(2000), 중·고등학교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pp. 110-118.
4) 김상수(2002. 6. 7), 주심은 이렇게 보는 거야, 동아일보.
5) 김상수(2002. 6.23), 판정 탓하기 전 자신 돌아봐야, 동아일보.
6) 김수경(2002. 6.13), 방송사 축구중계 '옐로카드', 동아일보.
7) 박영균(2002. 6.21), 축구인가 격투기인가, 동아일보.
8) 심규선(2002. 6.20), 작전이 된 반칙 플레이, 동아일보.
9) 심규선(2002. 6.26), 오심시비, 아시아 경시 탓, 동아일보.

10) 최관용, 조민선(2000), 유도 심판의 「판정」 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4), pp. 768-778.

11) 최종삼, 최관용(1999), 유도 판정 경기에 대한 심판과 선수의 견해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1), pp. 698-710.

12) 淺野 眞(1992), 陸上競技における安全對策, J. J. Sports Sci., Vol. 11(5), pp. 312-313.

13) 淺見俊雄(1988), 競技判定の科學, J. J. Sports Sci., Vol. 7(1), pp. 2-3.

14) 淺見俊雄(1988), サッカー審判の判定と動きについて, J. J. Sports Sci., Vol. 7(1), pp. 25-29.

15) 市川宣恭, 宮內崇生, 平井象三, 振田充彦, 星野 茂, 鈴木陽一, 振田吉治郎(1992), ボクシング, J. J. Sports Sci., Vol. 11(5), pp. 293-297.

16) 江成元伸, 花野誠一(1990), ハンドボールにおけるレフェリーの判定能力向上のトレーニングに關する考察, 日本體育學會, 第41回大會号 B, p. 688.

17) 木村多喜, 田中鎭雄(1991), 女子體操競技審判員の自己像と理想像に關する研究Ⅱ, 日本體育學會, 第42回大會号 A, p. 177.

18) 小林久幸 外(1988), サッカーにおける審判とその判定に關する研究(第8報), 日本體育學會, 第39回大會号 B, p. 663.

19) 小林久幸 外(1990), サッカーにおける審判とその判定に關する研究(第10報), 日本體育學會, 第41回大會号 B, p. 679.

20) 小林久幸 外(1992), 女子サッカーの國際・國內試合における主審とボールの移動距離に關する研究, 日本體育學會, 第43回大會号 B, p. 744.

21) 小林久幸 外(1991), サッカー試合中の主審とボールの移動距離の外國審判員と日本審判員の比較, 日本體育學會, 第42回大會号 B, p. 650.

22) 佐藤 裕, 吉原博之編(1990), 體育教育學, 福村出版: 東京.

23) 齊藤武利, 河野一郎, 江田昌佑(1992), ラグビーにおけるルールの變遷と安全對策, J. J. Sports Sci., Vol. 11(5), pp. 285-288.

24) 山下文治(1992), サッカー, J. J. Sports Sci., Vol. 11(5), pp. 289-292.

25) 武藤芳照, 太田美穗(1992), 水泳における安全對策, J. J. Sports Sci., Vol. 11(5), pp. 298-303.